

선수 랭킹 산정 내규

사단
법인

대한철인3종협회

제 정 2006. 01. 23.
 개 정 2008. 01. 19.
 개 정 2017. 01. 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선수 랭킹 규정은 다음 각 호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제정한다.

- ① 국내 최고의 선수를 선발하여 홍보를 위해
- ② 최고의 선수에게 지속적인 양질의 마케팅 기회를 제공을 위해
- ③ 동호인의 선수의 저변확대와 경기력 향상 동기 부여

제2조(범위) 본 규정은 본 협회 및 각 시도 협회에 선수 등록된 엘리트 및 동호인 선수에게 적용한다.

제2장 채점

제3조(대회구분)

- ① 엘리트 선수들의 올림픽코스, 스프린트코스 대회의 규모와 참가선수들의 경기력 수준에 의거하여 세계선수권, 월드컵, 아시아선수권, ITU국제대회, 전국체전, KTF1급(엘리트부 분리 경기에 한함), KTF2급로 구분한다.(2017년 개정)
- ② 동호인 선수의 경우 표준거리 랭킹과 장거리 랭킹으로 각각 구분 정한다.(2017년 개정)

제4조(대회구분별 채점표) 다음의 표에 의거하여 랭킹을 산출한다.

① 엘리트 선수

순위	세계선수권	월드컵	아시아선수권	ITU대회	전국체전	KTF 1급	KTF 2급
1	1,000	500	400	200	100	50	25
2	925	463	370	185	93	47	24
3	856	428	342	171	86	43	22
4	791	396	317	158	79	40	20
5	732	366	293	146	73	37	19
6	677	339	271	135	68	34	18
7	626	313	251	125	63	32	16
8	579	290	232	116	58	29	15
9	536	268	214	107	54	27	14
10	496	248	198	99	50	25	13
11	459	229	183	92	46	23	
12	424	212	170	85	43	21	
13	392	196	157	79	40	20	
14	363	181	145	73	37	18	
15	336	168	134	68	34	17	
16	311	155	124	63	31		
17	287	144	115	58	29		
18	266	133	106	54	27		
19	246	123	98	50	25		
20	227	114	91	46	23		
21	210	105	84				
22	195	97	78				

23	180	90	72				
24	166	83	67				
25	154	77	62				
26	142	71	57				
27	132	66	53				
28	122	61	49				
29	113	56	45				
30	104	52	42				
31	96	48	39				
32	89	45	36				
33	83	41	33				
34	76	38	31				
35	71	35	29				
36	65	33	27				
37	60	30	25				
38	56	28	23				
39	52	26	21				
40	48	24	19				
41	44	22	18				
42	41	20	17				
43	38	19	16				
44	35	18	15				
45	32	16	14				
46	30	15	13				
47	28	14	12				
48	26	13	11				
49	24	12	10				
50	22	11	9				

② 동호인 선수(2017년 개정)

순위	단거리(올림픽코스)		장거리(O2코스, 폴코스)	
	KTF1급	KTF 2급	KTF 1급	KTF 2급
1	100	75	100	75
2	93	70	93	70
3	86	65	86	65
4	79	60	79	60
5	73	56	73	56
6	68	52	68	52
7	63	48	63	48
8	58	44	58	44
9	54	41	54	41
10	50	38	50	38
11	46		46	
12	42		42	
13	39		39	
14	36		36	
15	33		33	

제5조(기록상한선) 남자 엘리트선수의 경우 1위 선수의 기록에 5% 이내, 여자 엘리트 선수의 경우 1위 선수의 기록에 8% 이내의 기록 차이로 완주한 선수에 한하여 제4조의 채점표에 의거하여 채점한다. 단 국내개최 국제대회에서 국내 선수가 1위 선수와의 제한 기록 차이 이내에 완주하지 못하거나 한 두 선수만 제한 기록 차이로 완주한 경우, 1위와의 기록 차이 내에 완주 선수

에게는 국제대회의 포인트를 주고 1위와의 기록차이를 벗어난 선수에 대하여서는 국내 1위 선수와의 기록 차이 내에 완주한 선수에 한하여 전국대회 랭킹 포인트를 부여한다.

제6조(점수 삭감) 누적 랭킹점수는 연말 1/3로 삭감하고 차기년도로 이월된다.(2017년 개정)

제7조(랭킹 제외) 선수가 2년 동안 대회에 한 번도 출전하지 않은 경우 랭킹에서 제외된다.

제8조(최대 누적 대회 수) 1년간 출전한 대회 중 가장 좋은 6개의 대회의 랭킹 점수들의 합산으로 랭킹을 정한다.

제9조(동호인부로의 전환)

엘리트부에 등록된 선수는 당해 년도 1년간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의적으로 동호인부로 출전할 수 없다.

- ① 참가신청을 한 후 본 협회에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대회에 3번 불참한 경우
- ② 은퇴 엘리트 선수의 경우 동호인부 출전이 가능하나, 시상 및 랭킹은 은퇴 후 만 2년 이후 가능하다. 상기 채점방식을 통해 산정된 랭킹에 따라 다음을 적용한다.

제3장 적용

제10조(적용) 상기 채점방식을 통해 산정된 랭킹에 따라 다음을 적용한다.

- ① 국내대회의 경우 각 부분 순위에 따라 출전번호를 부여한다.
- ② 엘리트 선수의 경우 수영 출발 포지션 선정 우선권을 부여한다.
- ③ 연말 최우수 선수상 및 최우수 클럽상 선정 시 근거 기준으로 삼는다.
- ④ 동호인 선수의 경우 대회 개최 1주일 전의 랭킹을 근거로 각부 랭킹 1위부터 3위까지 선수에게는 본 협회 대회 출전 시 참가비를 차등하여 감액해 준다. 1위 전액 면제, 2위 반액, 3위 1/3 감액한다.

제4장 부칙

제11조(시행) ① 이 규정은 2006년 1월 23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개정 규정은 2008. 1. 19부터 시행한다.
- ③ 본 개정 규정은 2017. 1. 21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